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심신장애’ 표현의 일괄 정비 〉

■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37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조문별 검토	6
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안 제1조)	6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	9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12
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 제4조)	15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안 제5조)	17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법률안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해촉 또는 면직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률명	내 용	현 행	개 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면직 사유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사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해촉사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심신장애가 있는 자가 반드시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위원의 해촉 또는 면직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심신’은 정신적·신체적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할 수도 있는바,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이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신(心身)’은 마음과 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심신(心神)’은 마음과 정신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입법례도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음.

<‘심신’에 관한 입법례>

구분	입법례
심신(心身)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입법례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심신(心神)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출처: 법제처

- 법률안에 따라 개정되는 6개 법률의 ‘심신’에는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아 법문언만으로는 ‘심신’이 둘 중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법률별로 위원회의 역할, 다른 면직·해촉사유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법률안은 현행과 달리 면직이나 해촉을 위하여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여부와 무관하게 위원회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사람은 위원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위원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명·위촉권자가 위원의 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심신장애에 관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법률행위성 유무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셋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위원의 면직 사유로 장기간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바¹⁾, 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법률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2. 조문별 검토

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개정(안 제1조)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²⁾.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면직·해촉사유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사건에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³⁾.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
- 2)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3)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의 면직·해촉 사유는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을 면직·해촉하려는 것이므로 취지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 사유 중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제8조(신분보장 등) ① ----- ----- ----- -----.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됨⁴⁾.

4)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면직사유로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⁵⁾.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들과 달리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위원의 면직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며 비교적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신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반면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지속기간과 무관하게 면직사유가 되는바, 이처럼 면직사유를 완화하는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것이 현행 법률의 취지 및 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경우 면직·해촉의 제약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3조)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해촉)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⁶⁾.

6) 제51조(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해촉사유로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정사건에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⁷⁾.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의 면직·해촉 사유는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금·보험 관련 기관·단체 또는 예금·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예금·보험 또는 예금·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라 위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을 면직·해촉하려는 것이므로 취지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 제4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 중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u>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 ----- ----- <u>사고</u> <u>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 -----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이용약관, 이용계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⁸⁾.

8)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면직·해촉사유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⁹⁾.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요구하는 경우 면직·해촉의 제약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요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 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안 제5조)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32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략)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 5. (생략) ⑥·⑦ (생략)	제32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¹⁰⁾.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면직·해촉사유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¹¹⁾.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
- 10) 제32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11) 제32조(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의 면직·해촉 사유는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을 면직·해촉하려는 것이므로 취지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6조)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 중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3. ~ 5. (생 략) ⑦ (생 략)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됨¹²⁾.

- 심신장애 외에 위원의 면직·해촉사유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사건에서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제시되어 있음¹³⁾.
- 개정안과 관련하여, 만약 현행 법률의 ‘심신장애’가 정신적 측면만을 의미한다면 개정안에 따라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곤란을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취지와 달리 면직 또는 해촉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면직 또는 해촉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
- 12)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보호산업 진흥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13)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률의 면직·해촉 사유는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위원을 면직·해촉하려는
것이므로 취지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